



“자원순환을 넘어 에너지기업으로”

##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KOREA RESOURCE-RECYCLING ENERGY MUTUAL-AID ASSOCIATION



수신 전 조합원사 대표이사  
[메일 송부 병행문서]

참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담당

제목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 소송(상고심)」 진행경과(55차)  
및 대법원 선고결과 알림

1. 한공조 2018-433호[「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 소송(상고심)」  
진행경과(54차) 및 선고기일 알림, '18.10.1] 관련입니다.

2.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18.11.9(금) 10시 진행되었습니다. 조합과 법무법인 광장, 조합원사 대표들이 수차에  
걸친 논의를 통해 상고이유보충서를 4번이나 제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음  
에도 「배출권거래법 및 시행령」에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투자가  
아니고, 화석연료 대신 온실가스 감축기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최종 기각  
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선고결과와 별개로 '18.9.7 자원순환사회  
경제연구소 주관으로 국회에서 개최된 “폐기물 소각시설 온실가스 합리적 감축방안  
전문가간담회” 시 지적된 문제점의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법원 상고심 판결문 1부. 끝.



##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

담당 협조자	김정훈	팀장	한인성	사무국장	장기석	부이사장	진원기	이사장	박무웅
시행	한공조 2018 - 450호		(2018. 11. 14)	접수					
우	04508	서울시 중구 종림로 50-1, 13층(만리동 1가, SKY100빌딩)							
전화	02-718-7900		전송 02-718-7171		/ krema@krema.kr		/ www.krema.kr		/ 비공개



# 대    법    원

## 제    1    부

### 판                결

사                건      2017두61652 온실가스배출권 할당처분취소의소

원고, 상고인      1. 대일개발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지원로 7 (성곡동)

대표이사 김대웅

2. 비노텍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308 (원시동)

대표집행임원 공진국

3. 성림유화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215 (성곡동)

대표이사 김영중, 김민정

4. 케이지이티에스 주식회사

시흥시 소망공원로 5 (정왕동)

대표이사 엄기민

5. 주식회사 뉴그린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순환로 602 (원정리)

대표이사 김형순

6. 더블유아이케이그린 주식회사 (변경 전 : 대길그린 주식회사)





환경부 웹사이트  
환경부 웹사이트

화성시 신남안길187번길 8-46 (신남동)

대표이사 송인규

7. 주식회사 에너지네트웍

부산 사하구 강변대로 20 (신평동)

대표이사 심연규

8. 주식회사 코엔텍

울산 남구 용잠로 328 (용잠동)

대표이사 이민석

9. 케이씨한미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케이씨환경서비스 주식회사

여수시 진달래길 310-73 (월내동)

대표이사 이강욱

10. 동양에코 주식회사

포항시 남구 대송면 철강로492번길 49 (옥명리)

대표이사 류용탁

11. 주식회사 명성환경

광주 서구 매월1로 50-4 (매월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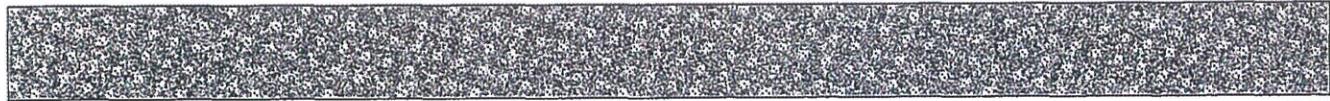
대표이사 원남희, 홍기석

12. 케이씨환경서비스 주식회사

여수시 진달래길 310-73 (월내동)

대표이사 이강욱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담당변호사 이규홍, 김용섭, 류직하)





음성 출력용 바

피고, 피상고인

환경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담당변호사 박시준, 이국현, 배태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7누38746 판결

판결선고

2018. 11. 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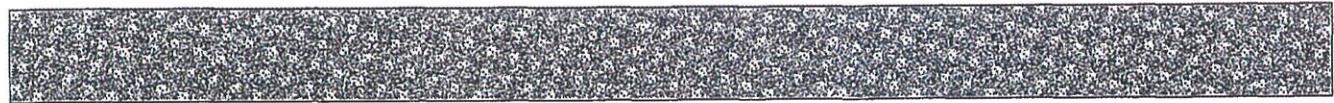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10. 1. 13. 제정되어 2010. 4. 14.부터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녹색성장법'이라고 한다) 제4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정부는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같은 날부터 시행된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2016. 5. 24. 대통령령 제2718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녹색성장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0까지 감축하는 것'이다.

녹색성장법 제46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율





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운영할 수 있고, 그 실시를 위한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관리방법 및 거래소 설치·운영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12. 5. 14. 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에 대한 배출권 할당의 기준은 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그 제7호는 '할당대상 업체의 시설투자 등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녹색 성장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말한다, 배출권거래법 제2조 제3호 참조) 달성을 위하여 하는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 조항'이라고 한다).

또한 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5. 24. 대통령령 제271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은, 그 각 호에서 정한 사항 및 배출권거래법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제7호에서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

2. 원심은, 원고들이 2010. 4. 14. 이후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한 시설투자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들과 같은 폐기물소각업체의 소각열(화석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다) 판매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배출권 할당 시 이 사건 법 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고려하지 아니한 데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  
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 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76 12 수



대법관

권순일

구 2 4 0 5



주심 대법관

이기택

5 7 월



대법관

박정화

박정화





# 정본입니다.

2018. 11. 9.

대법원

법원사무관 박원재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